

이 자료는 코로나-19 관련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한시적 지침으로 급여 제공 시 참고하되, 코로나-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예방이 우선되어야 함.

「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2차)」

2020. 2. 24.

I

목적 및 기본방향

□ 목적

- 코로나-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,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(1차)」에 이어 2차 지침을 추가 안내

□ 기본원칙

- **2020년 2월~3월(급여제공월 기준)**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(1차 2020.2.7. 2차 2020.2.24.)임.
※ 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은 동 내용의 2차 지침에 준해 최종 적용함. ... 확산 상황에 따라 지침은 추가될 수 있음.
- 종사자의 업무배제는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4개국 국가 (중국, 싱가포르, 태국, 일본)에 한하여 인정하고, 2020.2.18.이후 부터 2개국(홍콩, 마카오)을 추가하여 인정함.
-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관계 기록 등이 수반되어야 함.
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, 주민등록등본, 종사자 직무배제사유 기록 등
-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 시에도 수급자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.

Ⅱ

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

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'월 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

□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,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'유급병가'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

- (확진자 발생 시)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

- (의심되어 격리 시)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'병가일수'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

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항공권 등 치료·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

□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경우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'유급병가'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

- 1일 8시간,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'병가일수'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

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
□ 종사자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확진자와 이동경로(동선)가 겹치거나 중국 등 6개국 외 국가의 해외 여행력이 있어 기관(시설장)

의 판단 하에 업무배제를 한 경우

- 감염 우려로 인한 예방적 차원에서 기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업무 배제를 한 경우는 1일 8시간, 최대 7일 범위 내(진단검사 소요 시기 감안)에서 ‘유급병가’로 근무시간 인정 ...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간 30일 범위의 병가일수에 포함되므로, 종사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

※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해당 장소 이용 영수증, 확진자 이동경로 자료 등) 또는 해외 여행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항공권, 진단검사 결과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, 공단에 종사자의 근무내용 신고 시 “병가” 코드로 입력 (“예외사유” 코드 입력 불가)

- 종사자가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, ‘유급병가’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

- 1일 8시간,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‘병가’로 근무시간 인정 ...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간 30일 범위의 병가일수에 포함

※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보관

2. 시설급여 등 적극적 업무배제에 따른 감산 유예 특례

-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동 지침 II-1 「시설급여 등 종사자 ‘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」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시설장의 판단 하에 종사자를 업무 배제한 경우 해당 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

*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(다만, 야간직원배

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,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)
 ** 이 경우는 종사자의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항공권 등이 없더라도
 해당 종사자의 업무배제를 한 상황과 사유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.

3.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

- 고시 제62조에 따라 외부강사가 제공한 맞춤형프로그램 실제 제공횟수를
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 적용하며 외부강사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
가산 인정 불가

4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

< ‘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’ 예외 기준 원칙 >

- ◆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경우, 유선상담(월 2회) 수행 시 인정
 - *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 월 2회 유선상담
 (수급자, 종사자)하고,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... 기존
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‘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’에 기재(월 2회)
- ◆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(세부사항
 별지 제24호 ‘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’)을 반드시 보관

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
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(완전 중단)된 경우, 방문상담을 하지
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
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-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가 격리되거나 중국 등 6개국을 방문
 (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)하여,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
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(월 2회)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
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
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
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(일시중단 포함) 또는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(월 2회)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-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우려 등으로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의 방문상담이 불가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... 수급자(보호자) 방문상담 거부 포함

- ◆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구비 필요(중국, 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)
- ◆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.
- ◆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,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,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.
- ◆ 프로그램관리자(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)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(월 2회)로 인정

5. 주야간보호 이용기피 심화에 따른 특별 지침

□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(종사자 미배치)한 경우 : '근무가능일수 제외'

○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고시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'근무가능일수'에서 제외함.

※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: [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,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× 8시간]

□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정상적 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긴급돌봄 제공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배치한 경우 :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(5일)+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5일) 청구 가능

※ 고시 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(5일)+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5일) 청구하는 날은 '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'하고 해당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.

<정상적 기관 운영 중단 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>

1.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... 긴급돌봄수요조사 실시여부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

※ 긴급돌봄 수요조사 : 장기요양기관이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,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

2.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,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

3.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(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, 그 외 직종 1명)을 배치하여야 함

※ 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

□ 한시적 코로나-19 ‘미이용일 특례비용’ 산정기준

◆ (기본전제) ① 기존 고시(제32조제3항)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’ (최대 월 5일)은 현행 기준으로 산정하되, ② 2020년 2월~3월에 한하여 한시적 코로나-19 ‘미이용일 특례비용’을 별도의 기준으로 최대 월 5일 추가 인정하여 산정 ... ①, ② 적용 순서는 기관이 자율 선택

◆ (주요원칙) ... 2020.2.1.~3.31(2개월간)

① 2020.1.31.기준 2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

② 특례 적용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(월~금요일 기준 급여일정)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(본인부담금 제외) 지급 ... 특례 적용 월 기준 하루라도 이용 필수(사망일, 해외출국일 적용불가)

◆ (주의사항) 3월 특례비용 적용대상도 1월 31일 기준으로 공단에 2월의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.

① 공단에 1.31. 기준 2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

② 해당 월 중 하루라도 급여이용을 한 수급자만 해당되며,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

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을 하여야 지급하나,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.

- (적용일)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해당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(월~금요일 기준 급여일정)의 이용예정일에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월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... 사망일 이후, 해외출국 기간은 불인정

⇒ 2020년 2월과 3월에 한해 기존 고시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’ 5일 + ‘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’ 5일 ⇒ 월 최대 10일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 가능

- (인정비용) 해당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의 해당 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 (본인부담금 제외)

⇒ 다만, 고시 제31조의‘라-3’의 50%(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‘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’의 50%)를 한도로 함.

*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을 기존대로 수납할 수 있으나, 해당 특례비용은 본인부담금 수납이 불가함.

- (본인부담금) 수급자 비용 부담 불가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수납
- (월한도액) 미포함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포함됨.
- (중복급여 사용)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,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...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.
- (급여비용 가감산 기준)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 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에서 제외함.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'입소자 수'에서 제외 ②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,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출 시 '월 가산 기준금액'에서 제외 ③ 해당일에 부득이하게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'급여제공일'에서 제외(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) <p>※ '미이용일 특례비용' 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.</p> |
|--|

*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.

- (기타사항) ① 수급자의 감염 우려, 격리 필요 등 코로나-19 관련 이용취소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② 기관의 시설장 등(사회복지사 등 포함)이 이용 수급자의 미이용 의사를 확인 시에

는 방문요양 급여를 대체 이용을 안내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.

- (청구기간) 2020.3. 26. ~ 2020.5.31. 까지만 한시적 청구 가능

⇒ 2020.6.1. 이후 청구 불가

*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

- (청구종료일) 2020.5.31. ...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

○ (행정사항)

-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은 2020.3.26.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
되므로 구체적인 전산청구방법은 2020.3.26.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

... 2월 급여비용 원청구 지급 종료 후 전산 오픈하여 별도 지급 예정

⇒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(최대 월 5일) 대상자만 우선
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,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
대상자만 (청구전산화면) '가산 및 감액산정 / 입퇴소 내용관리
(주야간보호) /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'에 등록

참고

현행 기준과 코로나-19 관련 미이용일 특례비용 비교표

구분	현행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	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
관련근거	고시 제32조제3항	-
적용기간	상시 가능 2020년 2월~3월 (급여제공월) 가능	2020년 2월~3월 (급여제공월) 한시적 추가산정 ※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5일도 산정 가능
청구기간	급여제공월 익월	2020년 3월 26일 이후 ~ 5월 31일까지
청구종료일	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3년간	2020년 5월 31일까지 청구 시에만 지급
대상	*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 체결 *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완료된 수급자	* '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기준' 미적용 * 2020.1.31.까지 공단에 2월 급여계약 통보가 완료된 수급자
인정일수	* 평일(월~금요일) 기준으로 급여계약 통보된 일자에 한해 월 5일까지 산정 가능	* 해당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이 통보된 일자(월~금요일 기준)에 한해 수급자가 실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월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
인정비용	*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 * 고시 제31조의 '라-3'의 50% 한도로 함	*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 (본인부담금 제외) * 고시 제31조의 '라-3'의 50% 한도로 함
본인부담금	* 본인부담금 발생	* 본인부담금 미발생(별도 수납 불가)
월 한도액	* 비용이 월 한도액 포함	* 비용이 월 한도액에 미포함(차감되지 않음)
중복급여 사용	* 미이용일 비용 산정 시 주·야간보호 급여 이용불가, 다른 재가급여 이용가능	* 좌동
급여비용 가감산 기준	① 입소자수 : 포함 ② 월 가산 기준 금액 : 포함 ③ 급여 제공일수 : 포함	① 입소자수 : 해당 특례비용 산정 수급자 제외 ② 월 가산 기준 금액 : 해당 특례비용 제외 ③ 급여 제공일수 : 실제 이용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
기타	* 미이용일 급여비용만 산정일(기존 고시(5일) + 한시적 특례(5일))에는 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, 그 외 직종의 종사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산정이 가능함. (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) ⇒ 다만, 해당 일은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하고 '근무가능일수'에서 제외하고 종사자의 근무한 시간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함. * 전면휴업·폐업 등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제 미운영한 날에는 산정 불가	

6. 특별관리지역(대구·경북)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

- ☐ 특별관리지역(대구·경북)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감염우려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음 ...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까지
 - * 퇴사 직원의 실제 근무기간(6개월 상근 요건)에 관계없이 적용
- 장기요양기관은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지 않음.
 - ※ (예시) 3월 30일에 특별관리지역 해제되는 경우, 장기요양기관은 그 익월인 4월 30일까지 결원인원을 모두 채용하여야 하고, 미채용 시 5월부터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

7.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

- ☐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
-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
 -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,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% 추가 산정 가능
 - * 전산등록 경로 : 급여비용청구 /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/ 서비스 내역 저장 / 특정내용등록 /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/ 기타(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)

8.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

- ☐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 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
 -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... 동시에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하지 않음. (해당 월 야간직원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,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은 요건 충족 시 적용됨)

9.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

- ☐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
 - (격리기간 10일 이내)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
 - (격리기간 10일 초과)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
 - 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- ☐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
 -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, 최대 15일 인정
 - 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- ☐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
 - 시설(단기보호 포함)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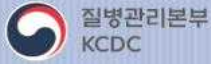
< 참고 > 근무시간 등록방법 : 휴가사유 “예외인정” 선택 후 등록 및 저장

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managing employee work hours and leave.

Top Screenshot: This screen shows the '종사자 근무시간' (Employee Work Hours) section. A dropdown menu for '휴가사유' (Leave Reason) is open, showing options like '모사망', '조부사망', '외조부사망', etc., with '예외인정' (Exceptional Allowance) highlighted. A red dashed box and a yellow circle with the number '1' indicate this selection step.

Bottom Screenshot: This screen shows the same interface after the leave reason has been set. A callout box states '휴가사유 "예외인정" 으로 설정' (Leave Reason set to "Exceptional Allowance"). The '휴가일수' (Leave Days) is set to 999. A red dashed box and a yellow circle with the number '2' highlight the '예외인정' option in the dropdown. A third yellow circle with the number '3' is next to the '저장' (Save) button, indicating the final step.

1.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!
 - * 손바닥, 손등, 손가락 사이, 두 손 모아, 엄지 손가락, 손톱밑 등
 -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.
 -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.
 -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.
2.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!
 - 특히,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.
 -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 -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.
3.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!
4.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, 폐렴이 발생할 경우
 - ① 보건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문의
 -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
 -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

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
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때
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
반드시 마스크 착용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선별진료소* (의료기관) 방문 시
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+120, 1339 문의



감염병이 의심될 때
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
접촉 금지



· 기침시 마스크 착용
· 손씻기, 기침예절 등
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
·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*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: 해외감염병 NOW 에서!

발행일 : 2020.1.29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

주요증상

발열

폐렴

호흡기 증상
기침, 인후통 등

위험요인

중국 방문 후
증상 발현



중국 방문객은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
반드시 마스크 착용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동물
접촉 금지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와의
기침, 인후통 등
접촉 금지



흐르는 물에
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,
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

중국 방문 후, 증상*발생 시

*주요증상: 폐렴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


관할보건소 또는 **1339,**
지역번호+120 상담하기



마스크 착용*하기

*특히 외출,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



선별진료소* (의료기관) 방문 시
의료진에게 **해외여행력 알리기**

*선별진료소 안내:
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게시일 : 2020.1.29

**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**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**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**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**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